

부속서 III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중국

목록 가

주해

1. 목록 가는,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중국의 기존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목록 가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적시한다.
- 다. **의무의 유형**은, 제10.8조제1항가호(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조치근거** 또는 **조치내용**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조치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그리고
- 마. **조치근거**¹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근거**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10.8 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바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1항다호 및 제3항을 조건으로, 목록 가의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조항들은, 조치내용 요소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유보항목의 조치근거에 적시된 법, 규정이나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적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목록 가의 유보항목을 해석하는 경우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유보된 조항이 고려된다. 유보항목에 명시적으로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조치내용 요소는 투자 자유화 측면에서 조치내용 요소와 조치근거 요소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목록 가와 목록 나の内容 간에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와 목록 가에 따라 중국이 부담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와 목록 나에 따라 관련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자격을 유지한다.

6. 목록 가의 목적상,

가. “외국인 투자자”란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모든 투자자를 말한다.

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다”란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권리나 지분 보유를 포함하여 중국 영역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 “중국인의 지배”란 외국인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총 투자 비율이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7. 목록 가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비서비스투자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문화산업, 기간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어떠한 투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투자에 관련된 그러한 유보항목의 모든 측면은 제8장(서비스 무역)만을 조건으로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가는 다음의 분야에 적용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수렵, 광업 및 채석업 그리고 유보된 그러한 분야의 전부 또는 조합.

1.

분야	:	종자 산업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에서 희소하고 특별한 귀중하고 우수한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육종 및 파종 또는 그에 관련된 생식 물질(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양식업에서의 고품질 유전자를 포함한다)의 생산에 투자할 수 없다. 2. 외국인 투자자는 농작물, 가축 및 육종 가금 그리고 수생 치어의 유전자 이식 품종의 선별 및 육종 또는 그 유전자 이식 종자(새싹) 생산에 투자할 수 없다. 3. 밀 또는 옥수수의 신품종 선별 및 육종과 밀 또는 옥수수의 종자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는 중국인의 지배가 요구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법(2015년 개정) 제 8 조, 제 11 조 및 제 62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2019년판) 제 1 조부터 제 3 조

2.

분야	:	어업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관할권에 있는 해수와 내수에서의 수산물 어업에 투자할 수 없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년 수산업법 - 1998 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제 5 조 - 1992 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제 11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2019 년판) 제 4 조

3.

분야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탐사 및 개발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모든 국제기구, 외국 실체 또는 개인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중국의 대륙붕에서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 중국의 대륙붕에서 시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치근거	:	1998 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제 7 조

4.

분야	:	희토류 및 희소광물의 개발 및 선광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투자자는 희토류 및 텅스텐의 탐사, 개발 또는 선광에 투자할 수 없다. 2. 외국인 투자자는 승인 없이 희토류 광산 광업 구역에 진입하거나 광산 지질학적 데이터, 광석 표본 또는 생산 공정 그리고 기술을 획득할 수 없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텅스텐, 주석, 안티몬 및 이온형 희토류 광물을 국가 보호광업 대상 특정광물로 분류하는 국무원 고시 제 2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 (2019년판) 제 5 조

5.

분야	:	자동차 제조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의 완성차 제조에 대한 투자는, 특수 용도 자동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하고, 중국 당사자의 지분 보유 비율이 50 퍼센트 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1 인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영역에서 동일한 범주(승용자동차, 상용자동차)의 완성차를 제조하는 지분 합작 투자를 2 곳까지 설립할 수 있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년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 제 48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 (2019 년판) 제 9 조

6.

분야	:	통신장비의 제조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위성 텔레비전 및 방송을 위한 지상 수신 시설과 그에 따른 핵심 부품의 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는 금지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텔레비전 방송용 지상 수신 시설의 관리에 대한 규칙(2018 년 개정) 제 3 조 및 제 4 조 - 2009 년 위성 텔레비전 방송용 지상 수신 시설 설치에 관한 잠정 조치 제 15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2019 년판) 제 10 조 - 그 밖의 모든 기존의 법, 규정 및 규칙

7.

분야	:	의약 제조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에서 야생 약용 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과 귀중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상 목록에 나열된 중국 전통 약용 재료의 가공에 투자할 수 없다. 2. 외국인 투자자는 증숙, 기본 포제, 보강제를 사용하는 포제, 하소를 포함하는 중국 약용 음편 가공 기법의 적용 또는 중국 특허약의 기밀 조제약의 제조에 투자할 수 없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년 탕약을 위한 한약 생산에 관여하는 외국 자본 기업의 사업 범위에 관한 관련 사안에 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회람 - 1987 년 야생 약용 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 - 1987 년 중국 희소 멸종위기 보호식물 목록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2019 년판) 제 8 조

8.

분야	:	정부가 승인한 독점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잎담배, 담배, 재건조 잎담배, 시가, 각초 및 그 밖의 담배 제품의 제조, 도매, 소매, 수입 또는 수출에 투자할 수 없다. ²
조치근거	:	- 2015 년 담배 독점에 관한 법 제 1 조부터 제 3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2019 년판) 제 13 조

²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그 밖의 담배 제품”은 흡연용, 흡입용, 씹는용 또는 코담배용으로 제조되고,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잎담배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지칭한다.

9.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관련 당국은 법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네거티브 목록의 적용 대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면서 네거티브 목록에 나열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허, 기업 등록 또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사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승인을 발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³
조치근거	:	2019 년 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정 제 34 조

³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네거티브 목록”은 중국 정부가 공표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의 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를 지칭한다.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p>: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A 주식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런민비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를 포함한다]⁴ 2) 중국 영주권 허가를 받은 외국인 3)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A 주식 상장회사의 인센티브를 수령한 외국인 피고용인 4) 중국에서 근무하고 모국의 증권감독기관이 이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감독 협력을 수립한 외국인 5) A 주식 상장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6) 향후 A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외국인 지분 보유 회사의 외국인 투자자 <p>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물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와 RQFII 를 포함한다) 2) 중국 영주권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리고 3) 지정된 선물 상품의 거래가 허용된 외국인 투자자
조치근거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년 증권법 제 166 조 - 2017 년 선물 거래 관리에 관한 규정 제 23 조 - 2006 년 적격외국기관투자자에 의한 중국 내 증권 투자 관리에 관한 조치 - 2013 년 위안화적격외국기관투자자에 의한 중국 내 증권 투자 시범 프로그램에 관한 조치 - 2018 년 상장회사 주식 인센티브 관리에 관한 조치 제 45 조 - 2015 년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조치 제 15 조 - 2018 년 증권 등록 및 결제 관리에 관한 조치 제 19 조 - 2019 년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의한 A 주식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사항에 관한 고시 - 2015 년 외국 무역업자 및 외국 중개업에 의한 지정 국내 선물 상품 거래의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 제 10 조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권 및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RQFII를 포함한다)는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자격, 주식 보유 비율, 투자 범위, 자금 이체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11.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중국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 등록을 완료하고, 계좌 개설, 자금 이체 및 정산, 수취 및 지급 그리고 국경 간 증권 투자 할당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외환 규정을 준수한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년 외환 관리에 대한 규정 제 16 조 및 제 23 조 - 2016 년 자본 계정의 외환 정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선 및 규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고시

12.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에서 개인 사업 실체나 개인 단독소유기업의 형태로 또는 농민전업합작사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2. 외국 자본 파트너십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다,” “중국인의 지배,” “상대적인 중국인의 지배” 요건의 적용대상인 산업, 분야 또는 사업이나 네거티브 목록⁵에 포함된 특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 또는 사업의 경우 설립될 수 없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년 개인 단독소유기업에 관한 법 제 47 조 - 2017 년 농민전업합작사에 관한 법 제 2 조부터 제 4 조 및 제 19 조 - 2014 년 외국인 투자 파트너십 기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 3 조 - 개인 사업 실체에 관한 규정(2016 년 개정) 제 2 조 - 외국인 투자의 시장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2019 년판) 주해 제 3 항

⁵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네거티브 목록”은 중국 정부가 공표하고 이 협정 발효일에 효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의 접근에 대한 특별 행정 조치(네거티브 목록)를 지칭한다.

목록 나

주해

1. 목록 나는,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중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목록 나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의무의 유형**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을 목적으로,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목록 나의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목록 나 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모든 투자자를 말한다.

5. 목록 나 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비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서비스(문화산업, 기간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어떠한 투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투자에 관련된 그러한 유보항목의 모든 측면은 제8장(서비스 무역)만을 조건으로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 나 는 다음의 분야에 적용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수렵, 광업 및 채석업 그리고 유보된 분야의 전부 또는 조합.

1.

분야	:	원자력 에너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을 포함한다), 핵연료, 핵물질, 핵원자재, 방사성 광물의 탐사·개발·가공,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원자력 관련 서비스, 원자력 기술 응용에 관련된 설계·제조·생산·이전·이용·수입·수출, 원자력 관련 계획·모니터링·정비·수리 서비스.
기존의 조치	:	-

2.

분야	:	생물자원 보호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중국은 중국에서 기원하고 중국의 보호를 받는 생물자원 ⁶ (인간, 동물, 식물 및 미생물 자원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승인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중국은 위에 언급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단체와의 협력 형태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이익과 후속적인 응용 및 상업화를 공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보호법(2018년 개정) 제 27 조, 제 40 조 및 제 48 조 - 축산법(2015년 개정) 제 16 조 및 제 17 조 - 초지법(2013년 개정) 제 44 조 및 제 49 조 - 종자법(2015년 개정) 제 8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 - 2013년 수산업법 제 8 조 및 제 46 조 - 야생식물보호에 관한 규정(2017년 개정) 제 16 조, 제 20 조 및 제 21 조 - 2019년 인간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규정 제 7 조, 제 21 조, 제 22 조 및 제 24 조

⁶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생물자원은 유전자원, 유기체 또는 그 일부, 생물 군집 또는 인류에게 실질적이거나 잠재적 용도 또는 가치가 있는 그 밖의 모든 생태계 생물학적 요소를 지칭한다.

3.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균형적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소수민족 ⁷ 과 소수민족 지역 ⁸ 에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⁷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소수민족” 은 중국 중앙정부가 확인하고 인정한 56개 민족 중 한족보다 인구가 적으며 한족이 아닌 55개 소수민족을 지칭한다.

⁸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소수민족 지역” 다음을 지칭한다.

- 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소수민족 지역 자치에 관한 법에 규정된 자치 소수민족 지역
- 나. 국무원에서 공포한 소수민족 도시 설립에 관한 고시 및 소수민족 도시에 관한 행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수민족 도시, 그리고
- 다. 윈난, 구이저우 및 칭하이인 중국의 3개 성

4.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특수 그룹(특혜적 대우의 그룹, 장애인, 노인, 최저생활보장을 향유하는 아동 및 가구 그리고 극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포함된다)에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5.

분야	:	국가 전통공예술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라이스 페이퍼, 떡, 호랑이 뼈 및 상아의 생산을 포함한 국가 전통공예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6.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비정부 기구(민간 비기업 단위, 협회, 재단, 외국 비정부 기구 그리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 및 그룹과 그 대표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2016 년 중국 영역에서의 해외 비정부 기구 활동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 - 2004 년 재단 관리에 관한 규정 제 6 조, 제 13 조, 제 23 조 및 제 24 조

7.

분야	:	토지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8.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이 보유한 자산 또는 지분권의 취득, 변경, 배분, 이전 및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9.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유보내용	:	<p>중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⁹</p> <p>수산업 부문에 대하여 중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대한 후속 검토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로까지 확장된다.

10.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투자자 및 그 투자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약정 또는 호혜적 대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11.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중국은 새로운 분야 및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